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1

발의연월일: 2020. 07. 06.

발 의 자: 박대수・임이자・윤영석

정경희 · 홍준표 · 이만희

이태규 • 구자근 • 김선교

권명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이되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8조 및 안 제8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제4호 중 "제8조의2제3항"을 "제8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
시설 설치신고 등) ① ~ ⑤	시설 설치신고 등)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u>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
	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
	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
	<u>야 한다.</u>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
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
	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u>③·④</u> (생 략)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28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제5항 및 <u>제8조의2제3</u>	4제8조의2제4
<u>항</u> 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	<u> </u>
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